

# 대학원 학위수여 규정

제정 1989.10. 1	개정 2002. 1. 1	개정 2007. 8.22	개정 2012. 3. 1
개정 1995. 5.15	개정 2003. 5. 1	개정 2009. 7. 1	개정 2014. 1. 1
개정 1998. 3. 1	개정 2003.12.22	개정 2010.10.18	개정 2014. 3. 1
개정 1999. 6.16	개정 2004. 9. 1	개정 2010.12. 9	개정 2020. 3.27
개정 1999. 8. 2	개정 2004.12. 1	개정 2011. 9. 1	
개정 2001. 6. 1	개정 2006.11.18	개정 2012. 1. 1	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포항공과대학교 대학원 학칙(이하 “학칙”이라 칭함)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본 대학원에서 수여하는 학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학위의 종류) 본 대학원에서 수여하는 학과별 학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 
(개정: 2012.1.1.)

1. 수학, 물리학, 화학 및 생명과학과 : 이학석사와 이학박사
2. 신소재공학, 기계공학, 산업경영공학, 전자·전기공학, 컴퓨터공학, 화학공학, 창의 IT융합공학 및 인공지능대학원 : 공학석사와 공학박사 (개정: 2020.3.27.)
3. 환경공학부, 학과간 협동과정, 첨단재료과학부, 융합생명공학부, 정보전자융합공학부 및 첨단원자력공학부 : 이학 또는 공학 석사와 박사 (개정: 2020.3.27.)

제2조의2(공동학위 수여) 석사, 박사 학위는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수여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. (신설: 2010.10.18)

제3조(학위수여의 요건) 학칙에 의거 본 대학원의 각 과정을 수료하고

1.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
2. 해당학과에서 인정하는 국제학술지에 한편 이상의 논문을 제1저자로 발표함을 원칙으로 하되, 학과특성 및 예외사항에 대해서는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 (개정: 2007.8.22)
3. 학위 논문심사에 통과된 자에게는 제2조의 구분에 따라 소정의 학위를 수여한다. 다만, 위의 제2호의 요건은 박사과정 및 통합과정에 한한다.

제4조(제2외국어 시험) 제2외국어 시험은 학과별로 필요에 따라 박사과정 학위수여 요건에 포함 시킬 수 있다.

제5조(종합시험) 종합시험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.

1. 박사 자격시험
2. 전공에 관한 구두시험
3. 논문에 관한 구두시험

제6조(박사자격시험) ① 박사자격시험은 별도 규정한 학과별 박사자격시험 요강에 따라 실시한다.

② 석사과정학생은 재학중 박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, 석사4학기까지 박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통합과정에 지원할 수 있다. (개정: 2004.12.1)

③ 본 대학 및 타대학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학생이 박사과정에 입학코자 할 경우 학과에 따라서 박사과정 입학시험에 박사자격시험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입학사정에 반영한다.

④ 소정의 박사과정입학시험만 치르고 입학한 학생은 입학후 4학기 이내에 박사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며, 2회 불합격시는 제적조치한다. 단, 통합과정에서 2회 불합격할 시에는 석사과정으로 전환할 수 있다. (개정: 2011.9.1)

제7조(전공 구두시험) 각 과정에서 이수한 전공분야의 종합적인 연구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의 전공별로 실시하되 학위청구논문심사와 병행실시할 수 있으며 그 판정은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한다.

제8조(논문 구두시험) 학위청구논문 내용에 관하여 실시하되, 학위청구논문심사와 병행 실시하며 그 판정은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한다.

제9조(논문지도교수) ① 각 학과의 주임교수는 학생이 입학 후 1년 이내에 각 학생의 논문지도교수(이하 “지도교수”라 칭함)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대학원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. 다만, 석·박사 통합과정 학생의 경우 입학 후 2년 이내까지 논문지도교수를 선정할 수 있다.(개정: 2009.7.1)

② 공동지도교수(Co-Adviser)는 해당학과의 심의를 거쳐 선정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(신설: 2006.11.18.)(개정: 2014.3.1)

③ (삭제: 2009.7.6)

제10조(논문 심사위원 선정) ① 석사학위논문의 심사위원은 지도교수를 포함 3명으로 하며, 지도교수가 선정하여 학과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는다.

② 박사학위논문의 심사위원은 지도교수를 포함 5명으로 하며 지도교수가 선정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는다.

③ 박사학위논문 심사위원 5명중 최소한 1명은 과외에서 선정해야 하며, 본대학 교수가 반수 이상이어야 한다.

제11조(논문심사위원) 학위논문의 심사위원장은 지도교수가 된다.

제12조(학위논문 연구계획서의 제출 및 심사) 박사과정과 통합과정에 입학한 학생은 졸업을 위해서는 학위논문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. (개정: 2006.11.18)

제13조(학위논문심사) ① 학위논문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소집하여 제출된 학위논문연구계획서(박사과정에 한함) 및 학위청구논문에 대한 심사, 전공구두시험 및 논문구두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학원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.

② 논문심사의 판정은 합격, 불합격으로 한다.

③ 학위논문의 통과는 전원 합의로 의결한다.

④ 통합과정에 재학중인가가 박사학위 취득에 충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중도에 탈락할 경우 석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졸업절차를 거친 후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.

제14조(학위수여의 결정) 심사위원회에서 통과된 논문은 대학원위원회에서 위원 2/3이상의 찬성으로 학위수여 여부를 의결하고 총장의 승인을 거쳐 확정한다.

제14조의2(학위기) 본 대학원 학위수여는 별지서식1 및 1의2에 의한 학위기로 행한다.  
(개정: 2009.7.1)

제15조(논문작성 요령) 학생의 모든 논문은 별도로 규정한 대학원 논문작성 지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.

제16조(명예박사학위) ① 우리나라의 학술과 문화발전이나 인류문화의 향상에 크게 공헌한 자에게는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으며 별지서식2 및 2의 2에 의한 학위기로 행한다.(개정: 2009.7.1)

② 명예박사학위는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절차를 거쳐 총장이 수여한다.(개정: 2006.11.18)

제17조(학위수여의 취소)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은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규정은 198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1. 이 규정은 1995년 5월 15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2. 이 규정 개정 이전에 시행된 것은 이 규정에 의거 시행된 것으로 본다.

## 부 칙

이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로 개정, 시행한다.

## 부 칙

이 규정은 1999년 6월 16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99년 8월 2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1년 6월 1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3년 5월 1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3년 12월 22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4년 9월 1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4년 12월 1일부로 개정하되 제6조 2항의 시행시기는 2005년 1월 1일부터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6년 11월 18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
부 칙

1. 이 규정은 2007년 8월 22일부로 개정하여,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. 이 규정은 2008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1. 이 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2. 대학원 학위기를 규정하고 있는 14조의 2 및 명예박사학위 학위기를 규정하고 있는 제16조는 2008년 8월 졸업생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0년 10월 18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0년 12월 9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2. (경과조치) 제2조 (학위의 종류)의 개정은 2011년 9월 1일부로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년 3월 27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
(별지서식 1)

석(박) 제 호

## 학 위 기

성 명 :

년 월 일생

위 사람은 본 대학 대학원 ○○부(과) 석(박)사 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과 논문심사에 합격하였으므로 ○○석(박)사의 자격을 인정함.

년 월 일

포항공과대학교 대학원장 ○○박사 ○○○ (인)

위의 인정에 의하여 ○○석(박)사의 학위를 수여함.

년 월 일

포항공과대학교 총 장 ○○박사 ○○○ (인)

학위등록번호 :

(별지서식 1의 2)

*Pohang University of Science and  
Technology*

*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Faculty  
hereby confers on*

○, ○ ○ (영문 성, 영문 이름)

*who has successfully completed Studies  
and passed the Examination and the Thesis Appraisal required  
therefor  
the Degree of*

*Master of Science(Doctor of Philosophy)  
in*

○ (영문 학과명)

*with all the Rights and Privileges thereto pertaining.  
Given at Poha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 
in the City of Pohang, Republic of Korea*

○ (학위수여일)

*(Signature)* \_\_\_\_\_

*(Signature)* \_\_\_\_\_

○ ○ ○

*President*

*Poha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*

○ ○ ○

*Dean*

*Graduate School of Poha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*



(별지서식 2)

명박 제 호

## 학 위 기

본 적(국 적)

성 명

년 월 일생

위 사람은 우리나라 학술과 문화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기에 본 대학 대학원위원회에 의결을 거쳐 이에 명예 ○○학 박사학위 수여를 추천함.

년 월 일

포항공과대학교 대학원장 (학위) ○ ○ ○

위의 추천에 의하여 명예○○학 박사학위를 수여함.

년 월 일

포항공과대학교 총 장 (학위) ○ ○ ○

학위등록번호 :

(별지서식 2의 2)

*Pohang University of Science and  
Technology*

*upon the Resolution of the Graduate School Committee  
hereby confers on*

○, ○ ○ (영문 성, 영문 이름)

*in Recognition of his outstanding Accomplishments  
and Contribution to the Advancement of Science and Culture*

*the Degree of*

*Doctor of Science, Honoris Causa*

*with all the Rights and Privileges thereto pertaining.  
Given at Poha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 
in the City of Pohang, Republic of Korea*

○ (학위수여일)

*(Signature)* \_\_\_\_\_

*(Signature)* \_\_\_\_\_

○ ○ ○

*President*

*Poha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*

○ ○ ○

*Dean*

*Graduate School of Poha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*